



# 『技術仲裁의 法制度化促求를 위하여』

A urging proposal for the legalization of technology arbitration organizations

金 岫 根\*  
Kim, Suen Guen

## 〈主要内容目次〉

- |                     |                          |
|---------------------|--------------------------|
| 1. 머리말              | 6. 技術仲裁制度의 必要性           |
| 2. 仲裁의 定義           | 7. 技術士法施行令에 條文化될 技術仲裁條項案 |
| 3. 仲裁의 메리트(merit)   | 8. 맺는말                   |
| 4. 仲裁와 關聯된 國內實定法規現況 | 9. 主要參考文獻 및 資料           |
| 5. 西歐先進國의 仲裁制度概要    |                          |

### 1. 머리말

現在(92. 6. 25) 法制處에서 審議中에 있는 技術士法案 中 技術士職務의 13個 法定明示用語中 “技術仲裁”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仲裁라는 말에 裁(判)字가 있어서 一般的으로 司法三審制度의 裁判과 混同하는 者가 或是 있는 듯하여 그 定義와 解說·仲裁機構의 必要性, 西歐先進國의 仲裁制度等에 關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東洋漢字文化圈에 屬한 韓中日 3個國은 똑 같이 仲裁(Arbitration)라는 同意同文字로 쓰고 있으나, 中國에서는 “裁定” 或은 “公斷”이라고도 辭典에는 적혀 있다.

筆者의 所見으로는 仲裁라는 말 代身에 “仲解”라고 하는 新用語로 改稱하기를 提案하며, 그 理由로는 裁判과 區別하기 위해서 이다.

즉, 우리나라 民法第 731條[和解의 定義] 『和解는 當事者가 相互讓步하여 當事者間의

紛爭은 終止할 것을 約定함으로서 그 效力이 생긴다』로 되어 있는 點에 立脚해서 仲間에서 紛爭當事者를 和解시키는 것이므로 仲解라고 하는 것이 仲裁보담은 훨씬 나은 말이 될 것으로 믿는다.

### 2. 仲裁의 定義

韓國의 仲裁法(1966. 3. 16. 法第 1767號)에서 定한 定義, 西獨民事訴訟法上의 定義, 日本法學者의 定義등을 다음에 紹介한다. 또 調停의 定義도 적는다.

〈1〉 『當事者間의 合意로 私法上의 紛爭을 法院의 判決에 의하지 아니하고 仲裁人의 判定에 의하여 迅速하게 解決하는데 있다.』 (仲裁法第 1條目的에서)

〈2〉 西獨民事訴訟法 第 10篇의 意義 『仲裁裁判所는 1人 或은 數人의 仲裁裁判官으로 構成되는 私的裁判所이고, 이것에 民事上의 權利爭訟의 裁判이 國家의 裁判

\* 土木(港灣 및 海岸技術士), 韓進開發公社技術顧問, (社) 韓國技術士會法制定推進特別委員會幹事

所를 代身해서 私的意思表示에 의해 委託된 것이다.』

〈3〉 日本法律學者 小山昇博士(北海道大教授)의 定義

『當事者 間의 合意와 當事者와 第三者(仲裁人)間에 合意에 의해 基礎를 두고 仲裁判決에 當事者가 拘束되는 根據도, 結局, 當事者間의 紛爭解決에도 合意하는데 있다. 즉 和解契約이 當事者의 讓步에 의한 自重的인 紛爭解決인데 比해서 仲裁는 當事者의 自主的인 設置成은 指定된 裁判機關에 依하여 自主的인 紛爭解決이다.(R-1 文獻參照)』

※ 仲裁에서 判決(Judgement)이란 말을 쓰지 않고 判斷(Determination)이라고 한다.

〈4〉 仲裁는 裁判節次를 管理하는 仲裁機關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이러한 仲裁機關으로는 臨時的 仲裁機關(ad hoc arbitration)과 常設的 仲裁機關(institutional arbitration)이 있으나 어느 기관에 의한 것이든 仲裁判定의 效力面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一般적으로 國際貿易紛爭의 處理에는 仲裁判定節次에 관한 事務遂行能力面에서 常設仲裁機關이 臨時仲裁機關보다 效率的이므로 이를 利用하는 傾向이 크다. 어느 方式의 仲裁를 利用하던 간에 仲裁의 基本的 要件은 紛爭 當事者間의 仲裁契約(arbitration agreement)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書面에 作成되어야 한다.

仲裁契約은 賣買契約書作成時에 仲裁에 관한 條項을 設定하여 插入한 仲裁條項(arbitration clause)과 紛爭이 발생한 후에 이를 仲裁로써 解決하기로 合意하는 事後合意(submission agreement)로 나눌 수 있다.

仲裁에는 斡旋(coucilation), 調停(Reconciliation) 仲裁의 3段階가 있다.

• 調停의 定義

1) 民事調停法(1990. 1. 13 法律第 4202 號)

『民事에 관한 紛爭의 當事者는 法院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第2條(調停事件))』

『調停은 當事者사이에 合意된 事項을 調書에 記載함으로써 成立한다.(第28條(調停成立))』

參考：日本の 民事調停法 第16條와 같다.

• 調停과 仲裁의 差異點對比

仲 裁	調 停
1) 民間機構(常設)	法院
2) 全國仲裁人名簿에서 當事者가 自由選擇	調停委員은 政府 或은 傘下機關이 委託
3) 仲裁制度利用促進	調停은 國際間 衰退傾向과 더불어 忌避傾向
4) 解決節次의 合意與否	解決案에 關한 合意與否
5) 8種의 特徵과 더불어 利用傾向 增大	不便·不服하는 事例許多
6) 仲裁에 관한 獨立立法化 傾向 ex) <sup>1</sup> 日本의 事例, 公害紛爭處理法에 의한 仲裁 韓國：ex) <sup>2</sup> 環境汚染被害 調整法 (1990. 8.1 制定公布)	調整(紛爭條項은 仲裁代置化 傾向)

(以下省略)

3. 仲裁의 效用(merit)

仲裁의 有用性은 細部的인 運用에 左右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이나, 여기서는 一般的인 仲裁의 效用性을 적기로 한다.

3.1 迅速性(Speedy)

司法三審制度에 의한 訴訟事件일 경우 相當한 時日을 겪게 된다는 것은 覺悟해야 한다. 裁判所에는 深刻的인 事件이 輻輳하게 되어 있고, 더욱이 終局判決에 대하여는 上訴가 可能하기 때문이다. 이에 反하여 例컨대 商事仲裁

에 所要되는 期間은 거의가 60日以內에 그친다.(別添 그림-1: 國內商事仲裁節次進行案內要參照)

消費者紛爭의 경우 그 迅速性의 效用은 매우 크다. 消費者는 迅速하게 그 滿足에 受理하고 다른 節次準備에 苦心하지 않아도 된다. 또 企業立場에서도 迅速處理上의 利益은 크다.

### 3.2 經濟性(Economy)

仲裁은 訴訟에 比해서 훨씬 그 費用이 廉價이다. 困難한 訴訟進行을 되풀이하는 費用은 없어도 되고, 또 仲裁人은 專門家(技術士資格者以上의)이므로, 專門家證人의 費用도 節減하게 되는일이 많다. 때에 따라서 仲裁人은 無料奉仕의 경우도 많아서 費用을 引下시키는 重要因이 된다. 더욱이, 辯護士에 의한 代理業務가 抑制되어 있고, 當事者의 支出費도 크게 節

減케 된다. 當事者에게 便利한 日時와 場所를 選擇하기때문에 給料나 收益은 犧牲치않고 이루어지며, 紛爭處理에 隨伴되는 負擔은 그만큼 적게 될것이다.

### 3.3 專門性(Speciality)

仲裁의 效用中의 하나로 仲裁人이 제각기 專攻分野의 專門家라는 것을 들수가 있다. 例컨대 美國仲裁協會(A.A.A)의 仲裁事件에서는 仲裁事件의 折半以上은 적어도 一人의 專門家가 包含된다고 한다.

商事仲裁를 利用하는 일은 많고, 專門仲裁에 信賴하고 있다는 것이고, 商習慣, 商品의 價格等에 관한 知識은 貴重한 것이다.

問題는 이러한 利點이 消費者紛爭時에도 크게 役割을 遂行하는 까닭에 있다.

確實히, 비지네스에 詳細한 仲裁人은 企業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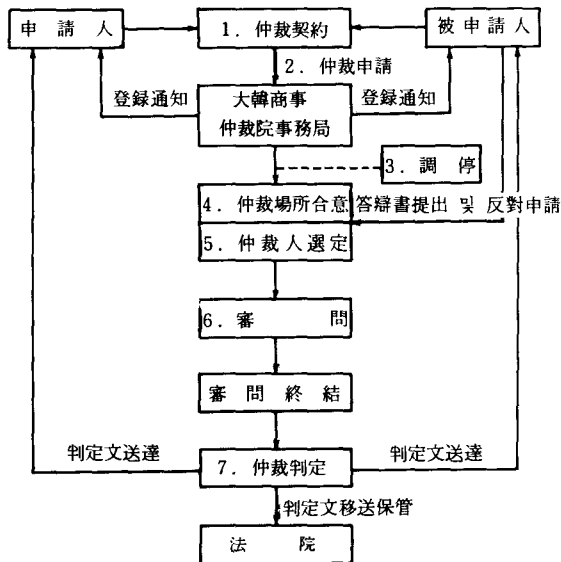


그림 1. 國內商事仲裁節次進行案內

1. 1) 계약시 삽입된 중재조항
- 2) 사후 합의
2. 1) 제출서류(단독 중재인의 경우 3부, 3인 중재인의 경우 5부)

- 2) ㄱ. 중재합의서  
 ㄴ. 중재신청서  
 ㄷ. 각종서증  
 ㄹ.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부
- 3) 중재 예납금 불입
3.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  
 (30일 이내에 조정이 안되면 다시 중재 절차 속행)
4. 1) 당사자합의로 결정(신청접수후 14일 이내)  
 2) 사무국에서 결정(당사자가 합의 못하는 경우)
5. 1) 당사자 합의로 선정  
 2)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규칙에 따라 선정(3인)
6. 심문개시 5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심문순서, 일시, 장소)  
 1) 서면심문(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구두심문
7. 1)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구술선고 불가)  
 ㄱ. 당사자 설명 또는 명칭과 주소  
 ㄴ.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ㄷ. 판정주문  
 ㄹ. 판정이유와 요지  
 ㅁ. 작성 년월일  
 ㅂ. 중재인 전원의 기명날인
- 2)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場에서 信賴할수 있는 判定者가 될것이나, 消費者에게는 어떻게 될지 別途問題인 것이다. 專門知識自體는 適切한 判斷에 役割하는 것이고, 充分히 그 客觀性이 擔保되어 있다고 할것 같으면 消費者에게는 그것이 有益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 3.4 非公開性(Unpublicity)

企業間の 紛爭에 있어서는 公開되는 것이 雙方에게 得策이 될수는 없다. 그 勝敗가 어느쪽으로 決定되든지간에 紛爭의 存在自體가 會社의 名聲을 傷害하게 되고, 商品의 評判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仲裁의 密行性은 크게 魅力的인 것이 된다. 仲裁에 있어서는 當事者間에 特別한 合意가 없는限 第三者가 審理를 傍聽하는 일은 용서할 수가 없다. 非公開에도 또다른 하나의 效用이 있다. 公開法廷에서는 非難과 反撥이 서로 튀기고 友好的인 關係가 破綻되기 쉬우나, 仲裁의 경우에는 靜穩하게 審理가 可能하고, 去來關係의 維持에도 可能한 것이다. 이 持性이 消費者仲裁關係와의 關係에서 어떠한 意味를 갖는가에 관한 問題가 있다. 企業立場에서는 非公開가 바람직 한것이 勿論이거니와, 一般的으로 消費者도 非公開를 싫어하는 까닭은 아닌 것이다. 企業은 率直하게 非違를 認定할 可能性이 있고, 特히 低所得層의 경우, 法廷이 갖는 威壓感에서 脫皮할수가 있고, 보다 沈着한 霧圍氣속에서 效果的으로 主張立證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가장 例外的이고, 消費者가 非公開를 忌避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例컨대 企業을 甚한 非難을 받게 하므로서, 公開立場의 處置에서 企業의 態度를 糾彈하고자하는 希望을 간직하는 경우 등이 바로 이것이 된다.

### 3.5 柔軟性(Flexibility)

仲裁는 裁判과 比較해서 보다 非公式(Informal)인 것이다. 仲裁에 있어서는 시끄러운 證據法의 規定은 適用되지 않고, 當事者가 提出

하는 證據의 許諾與否에 關係, 仲裁人은 廣範한 裁量權을 갖고 있고, 裁判所는 仲裁人의 措置를 取消할 수가 없다. 더욱이 仲裁人은 實定法에 嚴格히 拘束되는 일없이 衡平에 立脚하여 判斷을 내릴수가 있다. 거기서, 仲裁에는 節次에 彈力性이 있고, 消費者는 辯護士의 助力없이 權利를 行使할수 있는 可能性이 強하다.

仲裁에 있어서 仲裁人은 獨自的으로 調査를 開始할수가 있고, 當事者의 申告에 의하지 않고, 職權으로 罰則付召換令狀을 發付할 수가 있다. 審理場所以外的 곳에서 現場檢證을 할수 있는 點도 仲裁의 強點이라 할수가 있다.

仲裁의 場所도 보다 緩和(Relax)한 審理를 助長하게 된다. 法服을 着服한 判事가 高座에 자리한다. 그와같은 法廷의 威壓感이 없으므로, 仲裁는 그만큼 마음 便한 것이다. 仲裁는 普通平凡한 事務室이나 私邸에서도 施行되고, 仲裁人을 包含한 全員이 같은 卓子에 둘러쌓이는 일이 많다. 이러한 親熟한 霧圍氣는 裁判에서는 얼마간 若干의 小規模法廷에서 보는 일 에 不過한 것이다.

### 3.6 便利性(Convenience)

仲裁는 當事者間에 合意되는 곳에서 그가 願하는 時間에 施行되므로 消費者에게는 매우 바람직하다. 例컨대 움직이기 힘든 카벳, 冷蔵庫, 에어컨等 같은 紛爭에서는 그 所在地에서 審理할 수가 있고, 그 便利함은 매우 큰것이다. 저녁에 審理를 하거나, 週末에 審理日字를 넣을 수 있으므로 消費者에게는 勤務時間을 犧牲하는 일없이 便利하게 치를수가 있다. 이 利點은 中小企業에게도 相當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本來의 社會的活動을 흐트러 놓는 일없이 審理할수가 있고해서, 仲裁人에게는 매우 바람직 하다. 이 利點은 無報酬의 奉仕를 하게 되는 경우에 仲裁人에게는 格外히 큰 도움이 될것이다.

### 3.7 公正性(Rightfully)

이公正하다는要素도仲裁에큰魅力的인것이다.仲裁의強點은正義感에基盤을두고判斷하는데있는것이다.仲裁人을對象으로한外國의調査에의하면,그80%는實定法の基準範圍內에서判斷을내려야한다고생각하고있으나實定法을無視하는쪽이公正한判斷이될수있다고생각하는경우에限해서實定法을無視할수있다고생각하는者가90%가까이占하고있다고한다.

實定法은尊重되어있으나,어떤面에서正義앞에서는讓步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이다.이것이仲裁人의普遍的인態度인것이다.

衡平에의한判斷은裁判所에서도不可能한것은아니나,그機能은法律審判에限한다.이에對하여仲裁에있어서는事實審理의段階에서이와같은彈力的인判斷이許諾되는것이다.

### 3.8 終局性(Finality)

仲裁에固有한特性으로서는終局性에있다는것이다.仲裁에있어서는當事者가仲裁人의判斷에自主적으로順從하는趣旨上の合意에이루도록되어있으므로,仲裁判斷에自主적으로順從하는者가約90%에이른다고한다.

仲裁判斷에對하여는上訴의餘地가없다.確實히,仲裁判斷의效力에다투는일이없는것은아니지만取消할原因은매우狹少하다.主要한取消原因은仲裁人의偏見,不公正함과,이러한것이當事者에게提示되지않는限그에그치는경우에問題가된다.當事者의合意가있으면勿論,廣範圍한取消의餘地가認定되는것이나,美國의慣習法(common law)에서도制定法에서도一般的으로도取消의餘地는極히狹少한것이다.具體的인取消의原因으로서,證據物의提出을許諾하지않았거나,相當한理由가있는데도不拘하고期日の變更을許諾하지않았던일,審理過程에서當

事者의 한쪽 利益을 害치는 非行이 있었거나 하는일, 仲裁人이 그 權限을 超過해서 活動했던 일같은 것이 있다.(出處: 判例タイムズ NO.355, 1978年 アメリカ合衆國における仲裁法の現狀と課題, 小島武司 中央大教授 pp.35~36에서 拔萃함)

## 4. 仲裁와 關聯된 國內實定法規 現況

仲裁·調停·特別審判等 세가지로 分類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다.

### 4.1 仲裁에 關한 國內立法事例

#### 4.1.1 仲裁法(1966. 3. 16. 法第 1767 號)

全文 18 條와 附則으로 構成됨.

『이法 第 18 條(仲裁規則의 承認) 商工部長官이 指定하는 社團法人은 商事仲裁規則을 制定하거나 變更하고자 할때에는 大法院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1973. 2. 17)

그러나 大韓商工會議所 商事仲裁委員會가 作成한 商事仲裁規則은 1960 年 10 月 13 日 大法院의 承認을 받은바 있다.

#### 4.1.2 勞動爭議調整法(1963. 4. 17. 法第 1327 號)

全文 49 條와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고, 勞動爭議를 斡旋·調停·仲裁의 3 段階를 다 具備한 法律中の 첫번째 國內實定法이다.

#### 4.1.3 定期刊行物の 登錄등에 關한 法律 (1987. 11. 28. 法第 3979 號)

第 17 條(言論仲裁委員會)

第 18 條(仲裁節次등)

第 19 條(訂正報道請求事件의 審判)

※ 斡旋·調停段階없이 곧바로 仲裁節次를 받게 되어있다.

#### 4.1.4 環境汚染被害紛爭調整法(1990. 8. 1 法第 4258 號) 全文 52 條와 附則으로

構成됨

第1條(目的)……紛爭調整을 위한 알선·調停 및 裁定的 節次等を 規定함으로써……

第2章 環境紛爭調整委員會(第2條~第14條)

第3章 紛爭調整(Conciliation)

第2節 斡旋(알선), 第3節 調停(Reconciliation)

第4節 裁定(Arbitration) (第28條~第44條)

• 特徵

(1) 環境紛爭의 調整을 위해 斡旋(conciliation)調停(Reconciliation), 裁定(仲裁: Arbitration)等 세가지가 있다.(單一法上)

(2) 各種 環境委員會의 構成은 政府任命(免) 機關으로 傘下團體가 된다.

(3) 알선委員·調整委員·裁定委員 等, 이 法에 依해 法的指令을 行使한다.

(4) 民間仲裁機構에서 紛爭解決하는 西歐仲裁方式과는 判異한 官製行使를 하는 느낌이 든다.

4.2 調停에 關한 立法事例

4.2.1 建設業法(1958年 5月制定公布 十余次에 亘해 改正削除하다가 1988年 12. 31. 全面改正됨)

第32條 ①~⑩[第3章의 2, 建設業紛爭調停委員會]

4.2.2 電氣工事業法(1976. 12. 31. 法第 62967號)

第3章(第14條~21條) 電氣工事業調停委員會

4.2.3 電氣通信工事業法(1976. 4. 6. 法第 2893號)

第17條의 ②(電氣通信工事業紛爭調停委員會의 設置등)

第17條의 ③(調停의 申請등)

4.2.4 著作權法(1986. 12. 31. 法第 3916號)

第2條 ⑫ 컴퓨터프로그램

第4條 ①의 9,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

第7章(第81~90條)著作權에 關한 審議 및 紛爭의 調停

4.2.5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1986. 12. 31. 法第 3920號)

第27條(損害賠償請求)

※ 위 條項의 旨點을 活用하여 不法複製한 Computer program의 提訴件事例許多하다.(表-1 要參照)

註記: 科技處는 컴퓨터프로그램 保護法改正試案을 1992. 6. 8. 確定하면서 著作權法과 完全, 同一하게 紛爭調停하게끔 하였다.(R-2 要參照)

<表-1> 컴퓨터프로그램 不法複製·檢察 團束實績表 (SGK)

年度別	訴訟件數	拘束者數	外國業體에 의한 訴請 件數
88	5		
89	21		MS-DOS社 dBASE IV, wordstar等 美國3個社
90	30		日本 NNT等 3個社
91	76		美國 BSA社는 3次에 걸쳐 訴請함
92.4末	28	11人	

註記:

1. 컴퓨터프로그램 保護法制定公布후에 集計하기 始作한 것임.
2. 出處: 1992. 6. 9. 전자신문 7, 8, 9面記事에서 拔萃함.

4.2.6 醫療法(1973. 2. 16. 法第 2533號 全面改正)

第5章의 2 紛爭調停(54條의 2~54條의 8)

※ 中央醫療審查調停委員會는 保社部直屬下이고, 道知事所屬下에 地方 醫療審查調停委員會가 있다.

4.2.7 消費者 保護法(1986. 12. 31. 法第 3921 號)  
第 6 章 第 3 節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第 34 ~38 條)

4.2.8 不動產仲介業法(1983. 12. 30. 法第 3676 號)

第 19 條(損害賠償責任)

第 35 條의 2: (公衆事業)

第 35 條의 3: (紛爭調停委員會)

※ 不動產仲介業協會가 設置·運營한다.

4.2.9 證券去來法(1976. 12. 22. 法第 2920 號) 第 202 條(爭議調停機關의 設置)

4.2.10 保險業法(1977. 12. 31. 法第 3043 號) 第 197 條의 2(保險紛爭調停委員會)

#### 4.3 特別審判에 관한 立法事例

4.3.1 特許法(1990. 1. 13 法第 4207 號로 全面改定)  
第 7 章 審判 및 抗告審判(第 133 條~第 177 條)

4.3.2 海難審判法(1971. 1. 22. 法第 2306 號)

第 3 章 海事補佐人(第 27 條~第 30 條)

第 4 章~以下(審判의 細部條項)

第 3 條(審判院의 設置)…海難審判院…

※ 獨立된 海事 技術에 屬한다.

4.3.3 國稅基本法(1974. 12. 21 法第 2679 號)

第 7 章 審査와 審判(55~81 條)

第 67 條(國稅審判所): 國稅審判官에는 法律 專門家外에 公認會計士·稅務士·關稅士等이 資格者가 된다.

4.3.4 土地收用法(1962. 1. 15 法第 965 號)

第 25 條(協議와 裁決의 申請)

第 29 條(裁決事項)

第 37 條(審議의 開始)

第 38 條(裁決期間)

第 40 條(和解의 勸告)

第 43 條(裁決書)

第 73 條(異議의 申請)

第 75 條(異議申請에 대한 裁決)

## 5. 先進國의 仲裁制度 概要

### 5.1 美國

全國統轄組織으로 美國仲裁協會(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가 1926 年에 設立되어 美國唯一의 仲裁機關으로서 英國全 域에 한 仲裁를 掌握하고 있다.

이 團體는 非營利私의 團體로서 構成會員은 各種會社, 勞組, 業協會 法律事務所와 個人으 로 되어있다.

仲裁節次로는 聯邦仲裁法, 州仲裁法, 州仲裁 法이 없는 곳은 Common law 에 따라 그 節次 가 遂行된다.

※ FDIC 에 대한 仲裁節次는 그림 2 와 같다.

建設工事仲裁에 關하여는 1966 年까지는 美 國建築士協會標準約款(AIA 約款)에 따라 各 其 當事者가 一人의 仲裁人을 擇하여 그 利 人의 仲裁人이 第三者의 中立의 仲裁人을 뽑거 나 或은 仲裁人 全員을 商事規則(Commercial Rules)에 따라서 A.A.A 가 定하거나 어느 方法 에 依해서나 仲裁人을 定해 왔으나, 이 方法으 로는 當事者에게서 選出된 仲裁人이 偏頗的 傾向으로 놓이게 되어 欠陷이 많아서 1966 年『建 設業仲裁規則\*(Construction Industry Arbitration Rules)라는 總規則이 생겨서 오늘날에 는 建設業界의 大部分이 이 規則에 따르고 있 다.

※ 韓國技術(技術用役協會發行) 第 4 輯(1983. 7. 1)에 全文翻譯 掲載됨

### 5.2 英國

美國과 같이 統一的 仲裁機關이 없고 또 統 一된 仲裁規定이 없는 것이 큰 特徵이다.

그 主된 機關은 다음과 같다.

① 英國王室建築士協會(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RIBA)

② 土木學會(土木技師協會)(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I.C.E)

③ 構造技師協會(Institute of Strvctural Engineers=I.S.E)

④ 王室公認積算士協會(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RICS)

⑤ 仲裁人協會(Institute of Arbitrators)

⑥ 런던仲裁裁判所(London court of Arbitration)

⑦ 住宅建築會議(National House Building Council)

이러한 機關에 依存치 않고 紛爭當事者가 서로 合意된 仲裁人을 定해 놓고, 그 仲裁人에 依해서 紛爭을 解決하고 있는 實例도 많다.

### 5.3 西獨

仲裁에 關聯되는 機關은 美·英國과 같이 私의 機關이다. 各種 業協會, 聯合會, 商工會議所 등이 仲裁節次에 關한 細則을 作成하고 仲裁人名簿를 準備하여 仲裁에 關한 事務를 執行하고 있다. 例컨대, 建設工事に 關한 紛爭에는 西獨, 콘크리트建設業會(Dentscher Beton-Verein E.V.)와 西獨建設法 專門家團體(Deutsche Gesellschaft filr Baurecht E.V.)가 共同으로 『建設工事仲裁規則(Schiedsgerichtsordnung for das Bauwesen)』을 制定하여, 그 仲裁人候補者 名單을 作成하고 있다.

※ 翻譯內容: 大韓土木學會誌 Vol.31, No.6 1983. 2月號(by 金詢根)揭載됨

當事者의 合意에 따라 『建設工事仲裁規則』에 依한다고 定하면 民事訴訟法(Zivil Proze Bordnung)外에 이 規則에 따라 仲裁가 執行된다.

仲裁契約에 仲裁人에 關하여 規定이 없으면 各 當事者는 一人의 仲裁人을 定하게 되어있다.(民法 第1028條) 그러나, 實地로는 三人의 仲裁人을 쓰는 경우가 많고, 이 第三仲裁人(Obmann)은 大學卒, 司法試驗合格者(辯護士

或은 判事)라야 한다.

### 5.4 日本

建設業法 第25條에 依해 『建設工事紛爭審査會』가 設置되어 있다. 卽, 그 職務는 建設工事の 都給契約에 關한 紛爭에 對한 斡旋, 調整과 仲裁를 한다고 되어있다.

仲裁는 雙方申請 或은 建設業法에 依한 仲裁에 回付하는 趣旨에 따라, 當事者 한쪽의 申請으로 執行된다.

仲裁委員은 3人, 委員, 特別委員中에서 當事者가 合意에 따라 選定된 者에 대해 審査會의 會長이 指名한다.

審査會가 執行하는 仲裁에 關하여는 建設業法에 別途의 規定을 除外하고, 仲裁委員은 仲裁人으로 보고 民事訴訟法의 仲裁節次를 適用한다.

• 建設工事紛爭과 解決에 關한 中央 및 地方 調停委員會:

建設業에 關한 法(1949年法第100號)은 第3-2章 “建設工事 契約에 關한 紛爭解決(第25~4)”에서 建設工事로부터 發生하는 紛爭의 解決을 위하여 詳細한 規定을 두고 있다.

同法第25條에는 建設工事契約에서 發生되는 紛爭은 仲裁·調停 또는 斡旋에 依하여 解決하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紛爭解決에 關한 調停委員會의 設置根據를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建設工事紛爭의 解決에 關한 地方調停委員會는 東京都·北海道·大阪·京都와 43個縣에 1個式을 두고 있다. 建設工事紛爭에 關한 中央調停委員會와 共存을 하면서도 이들의 上級審이 아니며 仲裁規則도 서로 獨立적으로 갖고 있다.

## 6. 技術仲裁制度의 必要性

### 6.1 紛爭調整委現況

新聞報道를 引用하여 적으면, 名稱만 羅列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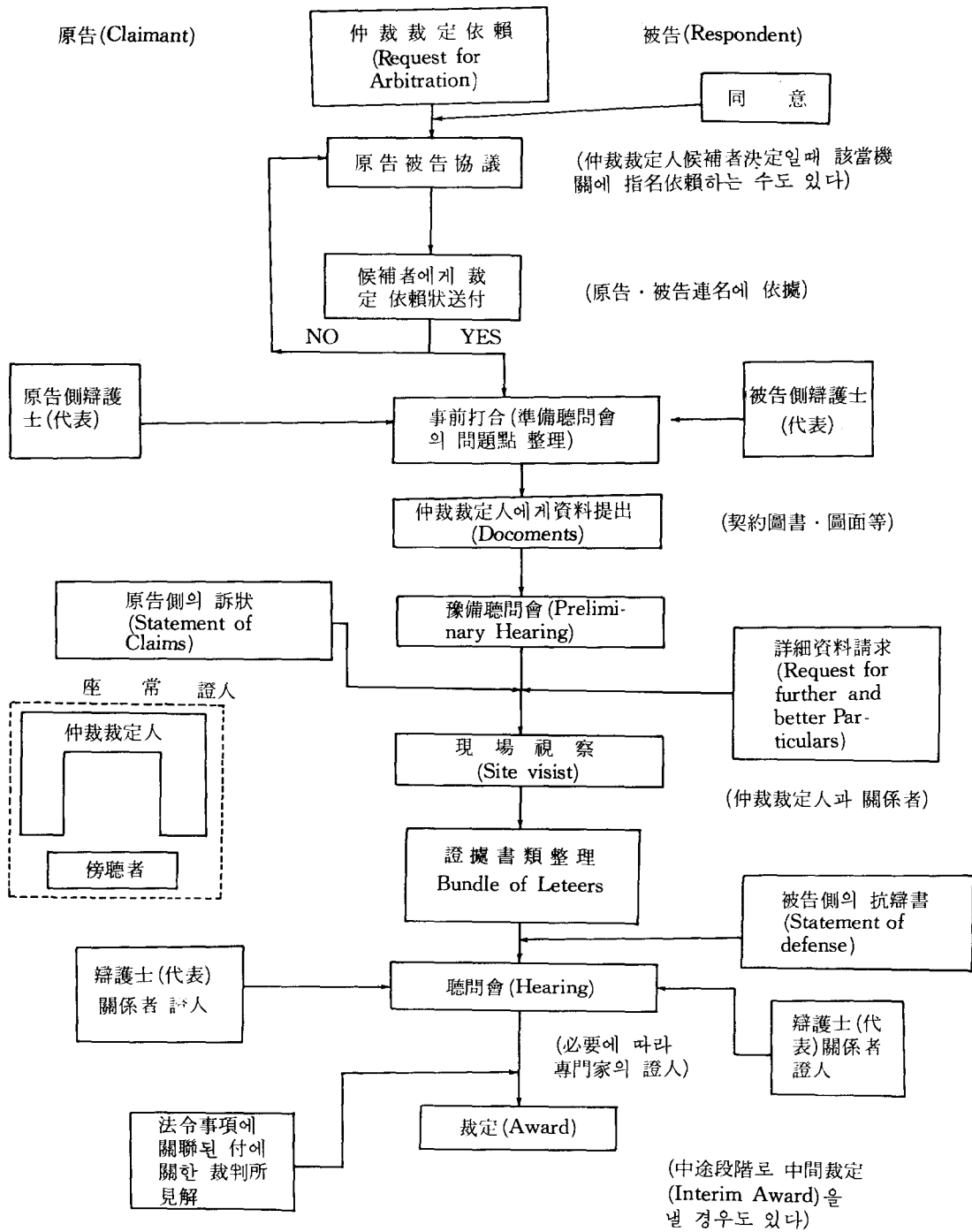


그림 2. 仲裁裁定作業의 FIDIC에 대한 Flow Chart

紛爭調整委員會가 無慮 11個나 된다.(표-2 要參照) 많은 紛爭調整委가 法으로 制定되 있으나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仲裁까지를 하게 되어 있는 勞動爭議(調整法), 言論仲裁, 商事仲裁等만이 活潑히 利用되고 있는 實情이다.

지난 77年에 設立된 證券爭議調停委員會는 機構만 있고, 只수까지 調停件數가 한件도 없다는 것은 證券市場의 活性化에 逆現象이라 아니 할 수 없다.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는 中央과 地方으로 二元化되었고, 一次調整機關인 地方調整委員會가 非常設로서 道廳環境保護課에서 委員會實務業務(委員委囑까지 包含한)를 맡고 있는 바람에 擔當部署가 固有業務에 바빠 調整申請(이 法第15條)接受를 꺼리는 傾向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調整이 됐다 하더라도 紛爭

當事者가 모두 받아 들이지 않으면 法的拘束力이 없는 弱點때문에 利用이 低調한 實情이다.

建設紛爭調停委員會가 調停한 3件은 모두 當事者들이 받아 들이지 않아 다들 正式裁判에 回附된바 있다.

이때문에 利用者가 每年 줄어들어 金融紛爭調停委員會의 경우 調停申請件數가 지난 88年 99件에서 89年 59件, 90年 48件, 91年 32件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消費者와 企業間의 紛爭이 增加함에 따라, 簡便한 調停節次를 利用하려는 消費者들은 많지만 企業들이 調停에 應하지 않아 結實(심)을 보지 못하는 境過도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民主化를 促進하는 길은 民間機構로서 法的 仲裁常設組織의 擴大活用이 要求되는 傾向에 있다고 볼수 있다.

〈표-2〉 조정·중재위원회 운영실태(中央日報 92. 5. 28)

위원회	신청 건수	기간	결 과(건)						계류 중	※ 關聯法規(SGK)	
			조정	중재	알선	행정지 도·자 체처리	불 성립	기각 · 각하			합의 취소
증권쟁의조정	0	77~91	0							證券去來法第 202條(爭議調停機關의 設置)	
금융분쟁조정	241	87.12~91	89					44	57	51	保險業法第 197條의 2(保險紛爭調停委員會)
건설업분쟁조정	35	89.12~91	3					18		14	建設業法第 32條
소비자분쟁조정	616	87~91	414					140	37	23	2 消費者保險法第 34條
중앙의료분쟁조정	8,959	89~91	144			8,653		28		134	保險業法第 197條의 2~8
중앙환경분쟁조정	1,140	91.7~92.4	70							935	135 環境污染被害紛爭調整法第 18~44條
저작권심의조정	58	88~91	29					22		7	著作權法第 81~90條
노동조정	6,701	89~91		295	732	272	590			4,812	勞動爭議調整法第 18~44條
언론중재	929	81~91		236				267	30	396	定期刊行物の 登錄등에 관한 法律第 17條
대한상사중재원	3,452	86~91		329	3,123						商事仲裁規則(大法院承記)

※ 筆者가 補筆한 것임

※ 기간은 실립연도와는 무관함

註記: 1992. 6. 8. 科技處는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改正法律案 確定發表한데 따르면 이法第 2條 및 第 29條등을 著作權 法과 同一하게(이 法) 調停審議하게 되어있다.

※ 環境污染被害紛爭調整法 第 2條에 의거함.

6.2 技術仲裁의 制度化必要性

仲裁制度化的 前提條件을 다음과 같이 提案한다.

- ① 民間仲裁機構의 法定設立
- ② 政府公共機關發注事業契約에 仲裁條項插入化
- ③ 各種 都給契約의 雙務性\*과 豫算會計制度의 整備補完
- ④ 技術仲裁知識(法的) 普及을 위한 補修教育實施
- ⑤ 標準約款의 制定 및 使用勸獎化
- ⑥ 技術士에게 法的 授任權의 擴大活用을 위한 法制化推進
- ⑦ 위 關聯事項과 其他一式

商事仲裁는 商業會議所設立歷史로 보아서 늦은感은 있으나, 1966年에가서 商事仲裁規則이 制定活用하기 始作하였다.(표-3要參照)

1963年에는 勞動三法이 同時에 制定公布되었는데, 勞動行政의 民主化를 위해 “勞動委員會法(法第1328號),” 勞動者의 團體交涉權과 團體行動權의 保障을 위해 “勞動爭議調整法(法第1327號)” 등이 仲裁法보다 먼저 斡旋→調停→仲裁等の 三段階를 밟는 獨立法이 制定公布된바 있다.

우리나라 社會的 經濟的發展과 併行해서 民主化는 言論仲裁\*\*로 發展하였고, 90年代에는 技術仲裁의 必要性이 環境污染被害紛爭調整에서 始作하였다. 社會的民主化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前述한 紛爭調停에만 그치던 實定 10個法도 仲裁까지 한段階 올려야 한다는것이 紛爭解決의 不實한 實情에서 알게 되었다.

技術仲裁가 必要했든 事例를 具體的으로 例示할 수는 없으나, ① 外資導入上의 紛爭發生事例(특히 플랜트建設과 合作投資企業에서) ② 建設工事施工時 工事現場에서 일어나는 集團民願事例(京鄉新聞 92. 5. 18. 23面記事) ③ 隣接建築物周邊에서 새高層建物建築時 發生할 수 있는 基礎掘削·地盤沈下·建物(現在)의 龜裂發生·其他等の 建築法, 都市計劃法上의 紛爭發生事例(許多하나 公開資料接受無로 掲載不能함), ④ 環境污染被害補償事例(서울신문, 92. 5. 5) 18面記事, 京鄉新聞 92. 5. 7. 22面記事, 서울신문 92. 5. 7, 18面記事等) ⑤ 『ㅎ·ㄴ글』 S.W.不法複製事例(조선일보 92. 5. 15. 記事)等 列舉하기에 끝이 없을 程度로 仲裁를 必要로 하는 紛爭發生件數가 日益增加하고 있다.

즉, 技術仲裁機構를 創立하여 技術仲裁가 必

<표-3> 商事仲裁機構發達年代表(SGK)

年度別	國別	仲裁機構의 名稱	仲裁規則內容概要
1926年	美國	美國仲裁協會(A.A.A)	全文 52 個項과 各種料金表
1938	和蘭	Amsterdam Arbitral Rules 草案作成된	
1955. 6		國際商業會議所(ICC)의 “調停 및 仲裁規則”	全文 3 條와 附則
1958.	UN	外國仲裁判定이 承認 및 執行에 관한 UN 協約	
1962~1966	ECAFE	極東經濟委員會仲裁本部仲裁規則,	“全文 8 條와 調整基準”
1963	日本	日本仲裁協會(1957年부터 日本商工會議內 仲裁委가 있었다.)	全文 49 個項
1966	韓國	韓國商事仲裁完(商事仲裁規則)	全文 52 項과 料金表(A.A.A 의 )

註記: 仲裁法은 1966年 3月 法第 1767 號로 制定公布됨.

要한 紛爭은 우리 技術者(士) 스스로가 解決하도록 法制化 推進을 強力히 促求하여야 할 것이다.

## 7. 技術士法施行令(이 令)에 條文化된 技術仲裁條項案

이 令 第2條(定義) 3~5項에다 技術仲裁에 關聯된 法定義를 條文化하였다.

『③法 第3條 第1項中의 監理와 技術仲裁라 함은 發注者(或은 當局)가 어떠한 事業遂行에 있어서 必要하게 되어 雇用하게 될 技術士가 該當事業의 設計圖書 其他 關係書類의 內容대로 事業遂行與否를 確認하고 全般的인 事業管理에 對한 技術指導가 監理이고, 監理上 技術士는 法的受任權을 갖고 發注者의 代理人役割과 紛爭發生時 技術仲裁規定에 따라 發注者와 都給者間에 仲裁人(者) 役割도 遂行한다.

④ 技術仲裁規定이라 함은 仲裁法第7條에 依據하여 大法院의 承認을 얻어 作成된 것을 말한다.

⑤ 技術仲裁人(者)이라 함은 社團法人 韓國技術士會가 定한 技術士資格保有者에게 所定의 履修課程을 畢한 者를 말한다.』

※ 商事仲裁規則은 仲裁法에 의거하여 大法院의 承認을 받은바 있다. 이 外에 第31, 32, 33條等に 條文化된 草案을 積은 것이다.

案第39條(技術仲裁機構의 設立과 役割) ① 이 法 第13條 및 第14條에 依據하여, 韓國技術士會는 定款에 따라 中央(서울)에는 技術仲裁委員會本部를 設置하고 全國의 各 地方支部 및 各 專門分會를 統轄管理할 수 있다.

② 技術士會는 國際的인 仲裁機構에 加入할 수 있다.

③ 위 項에 必要한 細部事項은 이 法令에 依據하여 施行細則에서 定할 수 있다.

案第32條(技術仲裁者의 補修教育 等) ① 이 法 第2條 및 第5條에 依據하여, 技術仲裁者의 補修教育은 基礎教育 35時間 以上, 平生教育은 年間 7時

間 以上으로 定할 수 있다.

② 基礎教育은 技術士中 希望者에게 履修시키는 課程이다.

③ 平生教育은 基礎教育 履修者로서 技術仲裁者로서 年間 7時間 以上 仲裁關係法規에 關한 教育 및 事例研究發表를 實施하는 課程이다.

④ 補修教育費用은 本人負擔을 原則으로 한다.

⑤ 위 事項에 關한 細部事項은 이 法令에 依據하여 施行細則에서 定할 수 있다.

案第35條(技術仲裁規程) ① 이 法 第2條 및 第5條에 依據하여, 韓國技術士會가 作成提出한 것은 科學技術處長官을 거쳐 大法院長의 承認을 받아 法的拘束力을 갖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技術仲裁規程은 仲裁法에 根據하여 作成하되 民事紛爭에 關한 仲裁에 必要한 모든 條項이 內包되어야 하고 全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의 同意를 얻을 수 있다.

③ 法的拘束力을 갖는 技術仲裁規程의 細部條項別 內容 一式은 이 法令에 根據하여 施行細則에서 定할 수 있다.

案第33條(技術仲裁規程)의 細部內容은 大略 다음과 같다.

〈參考事項〉 技術仲裁規程의 主要內容目次

- ① 當事者의 合意
- ② 法廷의 名稱(Name of tribunal)
- ③ 管理者
- ④ 義務의 委任(Delegation of Duties)
- ⑤ 全國仲裁人名簿
- ⑥ 法廷事務所(Office of Tribunal)
- ⑦ 契約中의 仲裁條項에 따르는 節次의 開始(Initiation under an Arbitration Promise in a Contract)
- ⑧ 크래임 또는 反크래임의 變更(Change of Claims of Counter Claims)
- ⑨ 節次의 開始
- ⑩ 事前審議會議等 其他一式(以下省略)

## 9. 主要參考文獻 및 資料目錄

- (R-1) 『仲裁法, 小山昇著, 法律學全集 38-Ⅲ, 日本 有斐閣 1983年發刊』에서 技萃.
- (R-2)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의 現行 및 改正 試案(科技處, 92. 6. 8 전자신문)』技萃』

※ “技術士란 무엇인가”(技術士誌 第25號 第3號, 1992. 6. pp. 20~22 參照)

※ 定期刊行物の 登錄 등에 關한 法律(第17條 外 第18條)에 근거함.

(R-3) 仲裁法律·常設仲裁 機關의 仲裁規則리  
스드

(R-4) 仲裁에 관한 國際協約事項目錄

(R-5) 『歐洲의 建設工事紛爭處理와 運用에 關  
하여』 技術士會誌 1983. 3~9月號要參照.

(R-1) 第一章 仲裁制度(日語文技萃, 省略)

(R-2)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改正試案對照  
(法條項)

〈現 行〉

第27條【損害賠償請求】 ① 프로그램著作權  
者는 故意 또는 過失로 그의 權利를 침해한 者  
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登錄된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  
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過失이 있는 것  
으로 推定한다.

③ 프로그램 著作權을 침해한者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利益額은 프로그램 著作權者가 입  
은 損害額으로 推定한다.

④ 프로그램著作權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額외에 그 權利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  
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損害額으로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8條【共同著作프로그램의 權利侵害】 共  
同著作프로그램의 각 著作者 또는 각 著作權者  
는 다른 著作者 또는 다른 著作權者의 同意없  
이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수 있으  
며 그 프로그램著作權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持分에 관한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  
의 請求를 할 수 있다.

## 第5章 補 則

第29條【프로그램審議委員會】 ① 프로그램著  
作權에 관한 重要사항과 프로그램의 이용, 流  
通등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科學技術處長官과 文化部長官이  
協議하여 위촉하는 關係公務員과 프로그램 및

著作權에 관한 專門家로 구성·운영한다.

③ 委員會의 機能·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關係部處와의 協議】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이 프로그램著作權에  
관한 重要사항을 決定·施行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文化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31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規定  
한 것 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著作權  
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規定을 適用한  
다.

第32條【權限의 委託】 科學技術處長官은 第  
21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의 登  
錄 및 제출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第33條【育成施策】 政府는 프로그래밍보호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品質保證·技術向上 및  
開發促進등을 위하여 公정한 去來精神에 입각  
하여 需要創出등 필요한 育成施策을 강구하여  
야 한다.

## 第6章 罰 則

(以下省略)

〈改正案 92. 6. 8. 전자신문〉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프로그램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9  
조 내지 제11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  
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앞의 『제5장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고 한다)  
을 조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저작권심의조  
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심  
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  
성하되 과학기술처장관과 문화부장관이 협  
의하여 과학기술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 2

인, 문화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 1인, 특허청소속 3급이상 공무원 1인과 프로그램 및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9인을 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29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9 조의 2(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사항
2. 과학기술처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3.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자문사항
4.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분쟁조정 및 쟁송절차에 필요한 감정기관의 추천
5. 프로그램의 이용 및 유통촉진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
7. 기타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 29 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9 조의 3(의정부) 위원회의 분쟁調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내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 29 조의 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9 조의 4(조정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 29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29 조의 5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9 조의 5(출석의 요구)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29 조의 6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9 조의 6(조정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의 7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以下省略)

(R-3)

〈仲裁 法律, 常設仲裁機關의 仲裁規則, 參照文獻略稱例〉

(英國)

AA §5=Arbitration Act, 1950, section 5. AA 1975.

LCA §5=The Arbitration Rules of the London Court of Arbitration, Rule 5.

Rus p.5=Anthony Walton, Russell on the Law of Arbitration, 19th edition, 1979, p.5.

Sop p.5=John P.H. Soper, A Treatise on the Law and Practice of Arbitration and Awards, 10th edition by David M. Lawrence & J. Melville Williams, 1966, p.5.

Hal p.255=Halsbury's Laws of England, 4th edition, volume 2, p.255.

Mus p.107=Sir Michael J. Mustill and Stewart C. Boyd,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England, 1982, p.107.

(美國)

USA §5=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bitration Act(Title 9, U.S. Code) section 5.

UAA §5=The Uniform Arbitration Act (Act relating to arbitration and to make uniform the law with reference thereto) section 5. 統一仲裁法

AAA §5=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section 5. 仲裁協會商事仲裁規則

CJS p. 158=Corpus Juris Secundum, volume 6, 1975, p.158.

Dom §501=Martin Domke,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cial Arbitration, 1968, section 5.01(節)

(西獨)

ZPO §1025=Zivilprozessordnung, Artikel 1025. 民事訴訟法

DAS §5=Statut des standigen Schiedsgericht beim Deutschen Ausschuss fur Schiedsgerichtswesen, Artikel 5. 仲裁委員常設仲裁裁判所規則

Sch p.225=Karl Heinz Schwab, Schiedsgerichtsbarkeit, 3. Auflage, 1979, p.225.

Mai 5=Hans Jakob Mair, Handbuch der Schiedsgerichtsbarkeit, 1979, 5

(佛蘭西)

CPC § 1442=(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article 1442.

CCI §12=Règlement de la Cour d'Arbi-

trage de la CCI(Chambre de Commerce Internationale), Arbitrage article 12. 國際商業會議所仲裁規則

Rob p.5=Jean Robert, Arbitrage civil et commercial 4<sup>me</sup> édition, 1967, p.5.

Bla p.793=Emmanuel Blanc et Jean Viatte,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p.793.

(UN)

UNC=UNCITRAL Arbitration Rules. 國際聯合國際商取引法委員會仲裁規則

(日本)

JCA=國際商事仲裁協會商事仲裁規則.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JSE=日本海運集會所海事仲裁規則. The Rules of Maritime Arbitration of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nc.

(韓國)

仲裁法 및 商事仲裁規則(社) 韓國商事仲裁院

定期刊行物の 登錄 등에 관한 法律(1987. 11. 28 法第 3977 號)

環境污染被害紛爭 調整法(1990. 8. 1. 法第 4258 號)

其他 不動產仲介業, 醫療關係 消費者保護團體(保險金) 獨立仲裁法規立法推進中에 있다. (SGK)

(R-4) 仲裁에 관한 國際協約 事項 目錄

1) 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LKES(仲裁條項에 관한 제네바 議定書) (1923 9 月 24 日)

2) 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外國仲裁判定的 執行 관한 제네바 協約)(1927 年 9 月 26 日)

3) CONVENTION ON THE RECOG-

---

NITION AND ENFORCE 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外國仲裁判定の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1958年 6月 10日)

4)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國際商事 仲裁에 관한 國際聯合決議文)(1958年 6月 10日)

5)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一方國家와 他方國家國民間の 投資紛爭 解決에 관한 協約)(1963年

3月 23日)(WASHINGTON 協約)

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CONVENTION)(國際商品 賣買契約에 관한 UN 協約)

※1980年 4月 11日 奧智利 VIENNA에서 열린 國際商品 賣買契約에 관한 國際聯合會議에서 採擇한 것으로 UN本部에서 加入 促進中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現在 加入 檢討中에 있음

7) 『UNCITRAL ARBITRATION RULES』(1976. 4. 28 議決, 1976. 12. 15 勸告決議案 採擇함)(全文 41個條)